

학 교 규 칙

	계	부장	교감	교장
결재				

설 월 여 자 고 등 학 교

설월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제 정	'96.11.07. 행정81411-1244
제 1차개정	'97.02.04. 행정81412-147
제 2차개정	'98.02.02. 행정81412-115
제 3차개정	'98.07.08. 행정81412-691
제 4차개정	'98.07.27. 행정81412-751
제 5차개정	'99.01.30. 지원81412-235
제 6차개정	'99.09.03. 지원81412-2052
제 7차개정	'00.12.08. 지원81412-3112
제 8차개정	'04.04.21. 설월여자고-491
제 9차개정	'04.06.18. 설월여자고-659
제10차개정	'05.04.11. 설월여자고-493
제11차개정	'06.05.02. 설월여자고-638
제12차개정	'13.04.04. 설월여자고-2733
제13차개정	'14.03.26. 설월여자고-244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설월여자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604번길 12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변경인가 '05.04.11. 설월여자고-493)

제5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수로 한다.(변경인가99.01.09. 지원81414-44, 99.01.30. 지원81412-235, 99.09.03. 지원81412-2052)

제4장 교육과정,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의1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2회에 한하여 총 1주일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4.03.26. 설월여자고-2443)
2. 교환·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하되,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희망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한다. ('13.04.04. 설월여자고-2733)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교류·교환학습 등으로 한다. (변경인가 '06.05.02. 설월여자고-638)

제9조의2 (과외수업의 금지) <삭제> (변경인가 .04.04.24. 설월여자고-491)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

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변경인가'05.04.11. 설월여자고-493)(변경인가'06.05.02. 설월여자고-638)(변경인가 '12.02.11. 교육과 교육과정과 - 1593) ('13.04.04. 설월여자고-2733)

제11조 (고사)

- ①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 로 한다.

제13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경일
 - 2. 공휴일
 - 3. 개교기념일 10월 2일
 - 4. 여름휴가
 - 5. 겨울휴가
 - 6. 학년말 휴가
- ②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변경인가 '04.04.24. 설월여자고-491)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 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변경 인가 '05.04.11. 설월여자고-493)
-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변경인가'05.04.11.설월여자고-493)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6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내신 성적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전·편입학 방법)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8조의2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군으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2조 준용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일반 편입 대상자 : 전·편·재 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2. 특례 입학 대상자 : 일반 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또는 수학기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인가 '04.06.18. 설월여자고-659)

제19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0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서약서) 입학(전.재.편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4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자퇴) 삭제

제26조 (표창) 삭제

제27조 (징계) 삭제

제28조 (퇴학처분) 삭제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29조 (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 (경제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 기준) 학년말 또는 학기말 평균 성적이 당해 학년 또는 학급의 상위 50퍼센트 이내인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제31조 (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 경과 후 2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변경인가 04.06.18 설월여자고-659)

제10장 (삭제 2000.12.08)

제32조 (삭제 2000.12.08)

제33조 (삭제 2000.12.08)

제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운영 - 삭제

제34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삭제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삭제

제36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삭제

제12장 학칙 개정 절차

제37조 (학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 하고자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야 한

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8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과목 담당 교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2인~10인으로 구성한다.
- ②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 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신설인가'05.04.11. 설월여자고-493)

제39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업무)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신설인가'05.04.11. 설월여자고-493)

제40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인가'05.04.11. 설월여자고-493)

제14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13.04.04. 설월여자고-2733)

제41조(목적)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학교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시행 방침)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6.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4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2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44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장이「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업 성취도에 관한 사항

-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로 한다.
-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전 교과목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로 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45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4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46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상급 학교에 조기 입학 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㉑, ㉒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㉑ 학업 성취도에 관한 사항

-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로 한다.

(2)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로 한다.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상급 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5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제46조제3항에 따른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교감)을 포함하여 본교의 교사 4명(교육운영부장, 교육연구부장, 생활교육부장, 교육정보부장), 학부모 2명(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 1명(본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중 현직 교원인 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4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4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2014.03.26. 설월여자고-2443)

제49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월여자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5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52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5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5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9조(교권침해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0조(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은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997.02.04. 행정81412-147)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2.02. 행정81412-115)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7.08. 행정81412-691)

이 학칙은 199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27. 행정81412-751)

이 학칙은 1998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30. 지원81412-235)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 정원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9.03. 지원81412-2052)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2.08. 지원81412-3112)

이 학칙은 2000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18. 설월여자고-659)

이 학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4.11 설월여자고-493)

이 학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02 설월여자고-638)

이 학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04. 설월여자고-2733)

이 학칙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26. 설월여자고-2443)

이 학칙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